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기한	2022년 11월 05일(토) ~ 11월 11일(금) 17시 도착분까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사전 방문 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 (대표번호 : 042-541-1009)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점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절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면)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v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1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 가정폭력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70%)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7,450,721원	7,200,810원~8,640,971원	7,326,073원~8,791,286원	7,779,826원~9,335,790원	8,233,579원~9,880,294원	8,687,332원~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8,692,508원	7,200,810원~10,081,133원	7,326,073원~10,256,501원	7,779,826원~10,891,755원	8,233,579원~11,527,009원	8,687,332원~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9,934,294원	8,640,972원~11,521,294원	8,791,287원~11,721,715원	9,335,791원~12,447,720원	9,880,295원~13,173,725원	10,424,798원~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의원의 실종·병거 등으로 소득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대상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자영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기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무직자	무직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접수장소

■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초과자)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건축물 종류</td> <td colspan="2">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주택 외</td> <td></td> <td></td> </tr> </table>	건축물 종류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외		
		건축물 종류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외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위원회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우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현재)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여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